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 26 기 정기)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근거하여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2.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 26 기(2020.1.1~2020.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150 원)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제 2-2 호 의안: 기준일 변경의 건(제 6 조의 3,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7 조, 제 37 조의 2)

제 2-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의 건(제 27 조)

제 2-4 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 12 조, 제 15 조의 2 제 23 조, 제 29 조, 부칙)

제 2-5 호 의안: 액면분할의 건(제 6 조)

제 3 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 인) **[별첨 2]**

제 3-1 호 의안: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2 호 의안: 조규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3-3 호 의안: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 년)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석 선임의 건(2년) **[별첨 3]**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 인) **[별첨 4]**

제 5-1 호 의안: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년)

제 5-2 호 의안: 조규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년)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 억원)

제 7 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공고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 6 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9일 9시 ~ 2021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열 감지'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더불어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보내실 곳 (등기우편 또는 퀵서비스)

서울/경기권에서는 착불로 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령인을 카카오 IR 팀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IR팀 김수열, 김다경 담당자 앞

연락처: 02-6718-1082 / 010 - 2972-8845 / 010-5773-2464

퀵서비스 번호: 02-1588-3047 (고고엑스), 1번 다이얼(개인퀵) 후 카카오 IR 팀으로 주주총회 위임장 착불 송부 요청.

2021년 2월 26일

주식회사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장 허인

[별첨 1] 정관변경의 안

제 2-1 호 의안: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 2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u>27. 대리운전서비스업</u>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사업목적 삭제 - 종속회사(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진행

제 2-2 호 의안: 기준일 변경의 건(제 6 조의 3,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7 조, 제 37 조의 2)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6 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9. 제 7 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	제 6 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 해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며,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3. 당 회사는 제 2 항의 경우에 기간과 일자를 그 기간 개시일 또는 그 일자의 최소 이(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기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기준일) 및 문구 수정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6. 전환사채의 이자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년도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15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년도	제 15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중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총회의 종류)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의 종류) 2. 정기주주총회는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상법 개정(기준일)
제 37 조 (이익 배당) 3. 제 1 항의 배당은 매 회계년도 말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7 조 (이익 배당) 3. 제 1 항의 배당은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상법 개정(기준일)
제 37 조의 2 (중간배당)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7 조의 2 (중간배당) (삭제)	상법 개정(배당기산일)

제 2-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의 건(제 27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7 조 (감사위원회) (신설)	<p>제 27 조 (감사위원회)</p> <p>7.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8.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9.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7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10.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상법 개정(감사위원회) 반영

제 2-4 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 12 조, 제 15 조의 2, 제 23 조, 제 29 조, 부칙)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2 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명부를 둔다.	제 12 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자등록법 반영

<p>(중략)</p> <p>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u>에 따른다.</p> <p>(신설)</p>	<p>(중략)</p> <p>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u>에 따른다.</p> <p>5. 당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u>소유자명세의 작성</u>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u>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의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전자등록법 반영
<p>제 23 조 (이사의 수)</p> <p>(신설)</p>	<p>제 23 조 (이사의 수)</p> <p>3. 당 회사의 이사회는 <u>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u></p>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이사)
<p>제 29 조 (이사회 구성)</p> <p>3.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규정 등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① 제 27 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②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③ 이사회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p> <p>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제 29 조 (이사회 구성)</p> <p>3.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규정 등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① 제 27 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②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③ 이사회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④ ESG 위원회(ESG Committee) 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위원회 신설
<p>부칙</p> <p>(신설)</p>	<p>부칙</p> <p><u>·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u></p>	부칙 신설

제 2-5 호 의안: 액면분할의 건(제 6 조)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p> <p>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u>일억오천만(150,000,000)주</u>로 한다. 주당 액면가는 <u>오백(500)원</u>이다.</p>	<p>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p> <p>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u>칠억오천만(750,000,000)주</u>로 한다. 주당 액면가는 <u>일백(100)원</u>이다.</p>	액면분할 결정

[별첨 2] 이사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규진	1973-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새롬	1990-02-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학력사항>	
		1994 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1998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광고학 석사
		2002 년	미시건 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광고) 박사
		<경력사항>	
		2002 년~ 2011 년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광고학과 조교수, 부교수
		2017 년~ 2018 년	광고연구 편집위원
		2017 년~ 2020 년 3 월	JTBC 미디어컴 사외이사
		2017 년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2018 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이사
		2019 년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2019 년~ 2020 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2019 년~ 2021 년 1 월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집위원장
		2011 년~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2016 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2017 년~ 현재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Editorial Review Board, Member		
2018 년~ 현재	한국엠씨엔협회 자문위원		
2019 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9 년~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주임교수		
조규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학력사항>	
		2007 년	MIT 기계공학박사
		2007 년	Post Doc, MIT
		2007 년~ 2008 년	Post Doc, Harvard Microbotics Lab
		<경력사항>	
		2008 년~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2013 년~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밀공학회 평의원
2016 년~ 현재	인간중심 소프트 로봇 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2017 년~ 현재	카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2018 년~ 현재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이사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학력사항>	
		2013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학사
		2018 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경력사항>	
		2018 년~ 2019 년	서울대학교 수학기반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연구원
2019 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별첨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윤석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석	1962-03-0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기간	내용
윤석	윤앤코 대표이사	<학력사항>	
		1985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1987 년	MBA, NYU 경영대학원
		<경력사항>	
		1988 년~ 1993 년	KPMG New York, Audit Manager
		1993 년~ 1997 년	SG Warburg 증권 (한국), Senior analyst
		1997 년~ 2011 년	크레딧스위스증권(한국) MD/리서치센터장
		2011 년~ 2014 년	삼성증권 전무, 홀세일본부장/리서치센터장
		2015 년~ 2016 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액티브운용총괄
		2017 년~ 2018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부사장) 대표이사
2019 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비상근 고문		
2020 년~ 현재	윤앤코 대표이사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등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첨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세정	1971-07-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규진	1973-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 약력 등

후보자 약력 등은 별첨 2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후보자의 체납사실 등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세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규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3월 29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서 _____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주주번호 : _____
- 2. 소유주식수 : _____ 주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_____ 주
- 4. 위임할 주식수 : _____ 주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의 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 성	반 대
제1호 의안	제 26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15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조)	
		2-2. 기준일 변경의 건(제6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37조의2)	
		2-3.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의 건(제27조)	
		2-4. 기타 일부 조항 변경의 건(제12조, 제15조의2 제23조, 제29조, 부칙)	
		2-5. 액면분할의 건(제6조)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3인)	3-1.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2. 조규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3-3.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석 선임의 건 (2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인)	5-1.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5-2. 조규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제7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6. 기타 사항(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등)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 임 일 자 및 위 임 시 간 : 2021년 월 일 시

※ 찬성, 반대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으며, 위임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만 유효합니다.